

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(일명 방통차)
QR 코드 관련 안내

2022년 4월

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

□ 방통차 구조변경 개요

○ 추진 배경

- 철스크랩 운반 시 낙철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 및 차량 안전운행 필요
- 불법차량 단속으로 인한 철스크랩 수급 불안정 해소
- 현실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합법화 필요

○ 구조변경 승인

- 국토부의 「민생고 해결 관련 경제활성화 제도개선」 사업 일환으로 방통차 구조변경 승인 (교통안전공단 지침)
- 관련법
 - * 자동차관리법 제34조 (자동차의 구조 · 장치의 변경)
 - *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(구조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)
 - *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- 1582(2008.8.12.)
고철 운송용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지시

□ 방통차 구조변경 업무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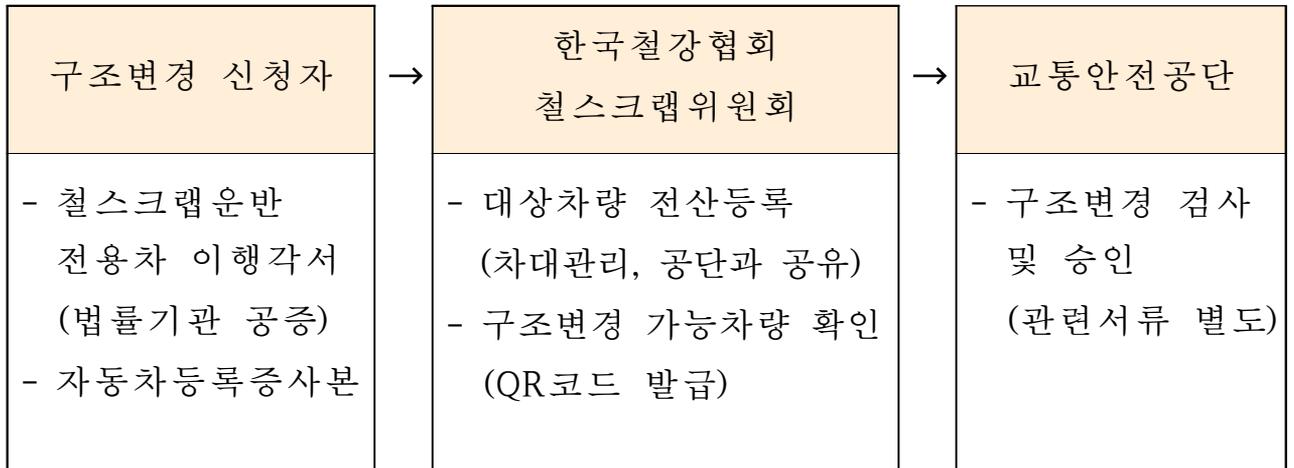
○ 방통차 정의 (교통안전공단의 방통차 구조변경 운영 지침)

- 최대 적재량 9.5톤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낙하 • 비산방지를 위해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기준 3,500mm 이내로 설치하고 양 측면에는 노란색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와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

※ 2022년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참고

※ '20년 발급양식 변경(RFID 표식판 → QR코드)으로 인한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수정 예정

○ 방통차 구조변경 절차



※ QR코드의 역할(중요성)

- * 방통차 전산시스템(공단과 철강협회 연계)에 등록된 구조변경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코드
- * 차량관리(차량정보,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)의 기본 수단

□ QR 코드 교체 주기 및 미교체 차량 벌칙 규정

- 발급일 기준 2년마다 QR코드 교체해야 함

근거 :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 제4호 (QR코드)

- 미교체 차량에 대해 벌칙 적용

근거 :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 제5호 (벌칙)

*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용도 해지 및 10일내 원상복구

* 2년 동안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로 구조변경 허용 안됨

□ 운송회사에 대한 협조 요청

- 귀사 소속 방통차가 QR코드의 교체기일(2년)을 초과하여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해당 차량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귀사에 QR코드의 교체기일(2년)을 초과한 방통차가 다수일 경우 귀사의 신규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이 예상되오니 귀사 방통차의 QR코드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구조변경을 원하는 차량의 전산등록 여부 확인

① 구조변경을 받으려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「철스크랩 운반전용차」로 구조변경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철스크랩 운반차는 차대번호로 관리됨으로 구조변경 업무에서 차량 번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

② 해당 차량이 구조변경을 획득했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차대번호를 준비하여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로 해당차량의 상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전화) 02 - 559 - 3574

팩스) 02 - 559 - 3508

□ QR코드 신청

* QR코드 신청에 사용되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 등록 프로그램 및

APP 사용 매뉴얼은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신규 발급

○ 준비서류 : 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

- 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는 맨 뒷장 첨부 참고바랍니다.

○ 신규발급 안내

① 「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」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

② 공증받은 서류를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.

③ 공증서류 발송 후 QR코드 발급비 140,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 계좌 : 1005-601-356277(우리은행), 예금주 : 한국철강협회

재발급

○ 준비서류 : 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

- 차량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

: 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(공증), 자동차등록증 사본

- 차량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

: 자동차등록증 사본

○ 재발급 안내

① 차량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: 신규차량 신청방법과 같습니다.

② 차량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

1.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, 철스크랩 운반전용차 이행각서 서명인이
기존과 동일할 경우 QR코드 재발급 가능

2.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 등록 프로그램 內 발행구분 **【신규(재발급)】**으로
신청 (기존 서류 보유시 동일하게 업로드)

3. 기존 QR코드 발급서류 미보유할 경우 철스크랩 위원회 문의

- 전화) 02 - 559 - 3574 팩스) 02 - 559 - 3508

③ QR코드 재발급비 70,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 계좌 : 1005-601-356277(우리은행), 예금주 : 한국철강협회

※ QR코드 만료일 등 재발급 상황은 차대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.

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

차 량 번 호 :

차 명 :

소유자 성명 : (인) (연 락 처)

차 대 번 호 :

본인은 본인소유 화물자동차가 철스크랩 운반 전용자동차로서 구조변경 승인 후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것이며,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 및 처분에 대해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확인합니다.

제 1 호 (철스크랩전용운반) 본인은 상기 차량이 「철스크랩 운반 전용차」 로서 제강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복화수송 외에는 철스크랩만을 전용으로 운반 하는 차량으로 운행할 것임

제 2 호 (구조변경 요령) 본인은 국토교통부, 교통안전공단, 한국철강협회의 「철스크랩 운반 전용자동차 구조변경 요령」 에 따라 철스크랩 운반차의 구조변경을 할 것임

제 3 호 (차량정보통보) 본인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이외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유자 변경, 주소지 변경 등 상기 차량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즉시 그 내용을 한국철강협회로 통보하여 차량관련 정보가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

제 4 호 (QR코드)① 본인은 철스크랩 전용 운반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 코드 「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로 등록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(이하 QR코드라 한다)」 를 이용한 불건전한 행위 방지를 위해 매 2년마다 한국철강협회가 등록 제공하는 QR 코드를 다음 가항의 기준에 의해 교체할 것임

가. QR코드 교체기준 : QR코드 발급일 기준 매 2년마다

- ② 본인은 한국철강협회가 발행한 QR코드는 상기 차량이 철스크랩 운반 전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, 동 코드의 무단 복사, 임의 제작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, 이러한 행위 적발 시 한국철강협회, 교통안전공단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취해 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임

제 5 호 (벌칙) 본인은 상기 각호 위반시 타의적으로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용도 해지 및 10일 이내에 원상복구 검사를 완료할 것과 2년 동안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로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

20 . . .

성 명 : (인) (주민번호 : -)

한 국 철 강 협 회
철 스크랩 위원회장 귀하